

교무처장 좌담회

□ 일 시 : 2008년 1월 29일(화) 16시
 □ 장 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실
 □ 진 행 : 박승철(성균관대 교무처장, 대학교육지편집자문위원회 위원장)

□ 참석자 : 김운배(동덕여대 교무처장), 박우순(동아대 교무연구처장), 박형빈(목포대 교육연구처장), 한건(충북대 교무처장)
 □ 정 리 : 최두현, 정수경(대교협)



진행자 : 이번 「대학교육」에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교무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고, 자율에 따르는 대학의 책무성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교무·학사운영에 관해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무·학사운영

동아대 박우순 처장 : 얘기 나눌 범위가 막연합니다만, 지금껏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육서비스라는 것은 소홀히 한 채 규제, 통제, 감독 기능만 강화해 왔었기에 자율화가 된지만 앞으로 얼마나 자율화가 될지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위한 서비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의 방식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사학법 등 관련법을 차치하더라도 지침, 지시사항, 내규, 〇〇계획 등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이나, 교육부 직원들조차 숙지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무엇을 자율화하고 무엇을 통제가 필요한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기본 줄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율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2007년 8월에 교육부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자율화한 항목 및 건수를 발표하였는데, 그 발표 자료에 명시된 내용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거시적 관점에서의 처장님 의견에 감사합니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 관료의 사고 변화입니다. 개별 규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북대 한건 처장 : 저는 국립대 입장에서 교육부의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관법령 53개, 시행령 74개, 시행규칙 61개로 그 내용만 해도 너무 많으며, 게다가 소관 부서도 각각 다릅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처·실·국을 포함하여 조직이 제한되어 있고, 5급 이상 직원 인사권까지도 교육부 권한이며, 예산 문제 역시 정부의 예산 회계법으로는 각 대학에 맞는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립대 법인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인화의 의미는 자생능력을 키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작은 수익까지도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생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수, 직원, 학생, 조교의 T/O까지도 통제받고 있는 이 많은 규제 시스템은 책무성을 완성하기에도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대 박형빈 처장 : 추가로 교육부에 보고하는 학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에서는 수업일수, 학점인정, 학생정원, 장학금 지급, 편입학, 교과 이수단위 등 소소하고 많은 사항이 학칙보고사항인데, 보고 후 권장사항 등의 조치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장사항은 표면상으로는 권장이지만 실제로 어겼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규제로 이어집니다. 대학마다 다른 실정들을 감안하여 대학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 대학 운영이 되도록 학부·학과·전공운영 등에 대해서도 배려했으면 합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총량을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예산을 각 부서에 배분해 놓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각 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니, 이 또한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조교 문제만 해도 20년 동안 정원이 동결되어 있고 급여 또한 정해져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 조교 임금총액으로 적절한 인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싶으나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규제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그러한 규제가 좋은 전통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덕여대 김운배 처장 : 저는 이번으로 교무처장을 세 번째 중임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자율이 되었다고는 하나 업무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 방법 등은 획일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학의 경우 계약제 교수들은 2년에서 재계약 1회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둔 계약제 교수들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나와 우리 대학에서는 학과의 평가나 학생평가도 좋지 않았음에도 복직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례는 그 이전에 그만 둔 교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현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 현장의 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규제만 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운영을 어떻게 자율성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입학정원, 입시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의 규제가 풀려서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진행자 : 규제가 문서상은 없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분배권이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많은 규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의 지침들은 너무 많고 법과 상충되는 규제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21사업 관련한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교수를 선발하고 10년 후에 ○명을 선발하라는 등의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교육법시행령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아대 박우순 처장 : 교육부 부서 간 이해관계,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이 너무 복잡하여 대학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일상적인 일을 제외하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서 처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행·재정적인 부분을 교육부는 '지원'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규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대학에 행·재정적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규제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원 인사

진행자: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파격적인 패러다임으로 개교한 미국의 오베른대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베른대학은 개교한 지 6년 된 대학으로 엔지니어링 스쿨만 있습니다. 이 대학에는 테뉴어제도가 없이 종신까지 교수는 5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교수의 이노베이션이 소멸되면 더 이상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였다면 이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규제가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종신을 전제로 한 하나의 임용방법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 특성에 맞게 교수를 평가해서 재임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논문의 질에 상관없이 논문 숫자 등의 기준만 채우면 재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직위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임에는 틀림없지만, 능력 없는 교수의 직위까지 보호하고 있어 역기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동아대 박우순 처장: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맞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학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당연히 대학을 보호·방어해줘야 합니다만 서비스 마인드는 없이 규제, 통제만 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제도적으로 다양한 교수임용이 가능하도록 현재와 같은 획일화된 교원임용체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

니다. 교육전담, 연구전담, 교육+연구 등 다양하게 선발하여 업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있으면 결국 대학에서는 강사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자율적으로 대학이 특성에 맞는 교수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줘야 할 것입니다. 자율을 악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학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그 소수 대학 때문에 규제나 통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북대 한건 처장: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대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의거 제외 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겠으나 각 대학 실정에 맞게 빨리 채용해야 하는데 장애가 되고 비효율적 면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채용 방식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지양하고 유연하고 특성에 맞게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교원의 정원을 공무원 수급에 맞춰서 규제하고 있는데 교원 정원 확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정 소요 연수만 지나면 자동 승진되는 교수의 승진 시스템은 교수들의 연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능력이 우수한 교수에게 승진을 위한 최소 소요 연수를 줄여주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교원확보율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요구하는 교원확보율이 입학생 대비, 재학생 대비, 편제정원 대비 등 다양합니다. 사업비 신청 등의 경우 재학생 대비 교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원 외 입학생에 의해 대학마다 편차가 심하므로 편제·입학 기준을 적용하여 확보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원 외 입학은 중용하게 될 것입니다.

목포대 박형빈 처장: 국·공립대학의 교수 채용방식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공개채용 방식의 경우 학교에서 원

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입시처럼 최소 자격 요건만 갖추면 선발해야만 하는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어떤 방식이든지 좀 더 자유롭게 교수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동아대 박우순 처장 : 규제의 범위나 형태가 어떤 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규제의 완화, 개선보다는 규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면 법령에도 없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의 문서 하나로도 대학 행정에는 규제나 통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제라 여겨지는 부분은 모두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한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허용되는 것은 아예 대학에 일임해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소관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인사 행정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율에 대해서는 책무성 문제가 뒤따릅니다. 우리 대학들에게 교수 채용 비리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뒤따랐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처럼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시장에서 평가도 받을 수 없는 비리교수 채용이나 내부자끼리 담합해서 교수를 채용하는 것 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경우는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수 채용 시스템은 선진국과 동떨어져 있고, 기업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정도에도 못 미칩니다. 어차피 내부통제(self control)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학이 각 대학 특성에 맞게 교수를 채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아대 박우순 처장 : 내부 비리, 불법 등의 내용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공개될 것이고,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하는 대학은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동덕여대 김운배 처장 : 교수채용 시 학력 등 교원자격 규제는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교육부는 각 대학의 총 정원만 배정하고, 학교 내 학과 당 배정인원, 학과 전공개폐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원과 학과 및 전공 개설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과 학과 및 전공 개설

동덕여대 김운배 처장 : 현재 교원확보율은 학생 정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육부에서 정원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주·야간이 있는 대학의 야간을 주간으로 옮긴 것과 관련하여 정원의 2%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간 인원이 많아짐에 따른 건물, 시설확보 등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원 한 명을 늘이기 위해 대학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어떤 기준만을 제시하며 통제의 한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시킵니다. 우리대학 약학과의 경우는 정원이 40명밖에 안되는데, 교육부가 정원 허가를 하지 않아 학과가 아닌 약학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의 정원문제는 최소 기준만 정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대 박형빈 처장 : 우리나라의 대학을 보면, 수도권이라는 태생적 환경이 비교우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교수나 학생의 질이 반드시 더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학생들은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 대학이 좋다고 하면 학생 이외 다른 모든 것까지 그 대학들이 독식하려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어떤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국·사립, 수도권·지방대학간 담당 역할이 뚜렷하고, 특성화가 뚜렷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학 간 특성화도 혼란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므로 인기가 없거나, 보호해야 하거나, 살려야 하는 학문까지도 아우르고, 지원 학생 수가 적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행·재정 지원이 되어야 합

니다.

충북대 한건 처장 : 학생 정원과 관련해서 고등교육 환경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학령아동은 보통 3~17세를 일컫는데 2005년 960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은 870만 명, 2020년에는 6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령인원이 줄어들면 수도권·지방, 국립·사립의 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학의 미충원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대학 진학률은 점점 높아져 90년대 32%였던 것이 06년은 82%로 나타났지만, 대학의 경제사회 부합도는 OECD 61개 국 중 50위로 산업현장 적합도도 미흡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대학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학생자원, 자율화 정책 등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정부는 기본방향, 학생의 총정원 정도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장경제 논리로 탄력성있게 대학운영도 이뤄질 것이고 고등교육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대 박우순 처장 :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 강화가 되는 것에는 동감합니다만, 국가경쟁력·대학경쟁력 등의 접근이 어찌면 정부가 내세우는 대학 규제용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고, 대학 간 고리에 따라 학생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율화가 되면, 자율 경쟁을 통해 하위권 대학은 결국 도태되거나 자동 소멸이 될 것이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학생자원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 정원 규제 문제는 교육부가 가진 큰 칼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정원 확보를 위해 학과를 분과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요에 따라 학문을 늘이고 감소하는 등의 학과 정리 문제는 교수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공립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총 정원 안에서 학

문영역과 관련해 학과의 소멸·생성 등은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대학원과 학부(과)의 인원 배정도 내부적 인원 조정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열어주어야 합니다. 캠퍼스가 두 개이더라도 본교-분교(양 캠퍼스에 유사 전공이 있는 경우)의 경우와 캠퍼스만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다르게 보고 학생 정원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많은 내용은 물론 오늘 얘기의 핵심인 교수임용시스템의 다양화와 정원 운영의 자율화는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화 후 악용하거나 문제되는 대학은 규제가 아닌 법적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논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